

언론자유와 언론개혁

때 : 2001.3.23~24

장소 : 서귀포KAL호텔

주제발표자 : 南 時 旭 (언론인)

兩面作戰의 개혁전략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2001년 월 19일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와의 회견에서 언론개혁에 관해 대단히 중요한 언급을 했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우리 언론매체들은 그 의미에 대해 별로 주목하지 않은 채 찝막한 사실보도만 하고 말았다.

김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언론개혁에 관해 “정부는 실정법에 의해 경영상의 문제만 하고 편집문제와 공정보도 문제는 여야, 언론계, 시민단체가 국회에서 할 일입니다. 정부가 개입하면 언론탄압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지요”라고 밝혔다. 그의 실정법 관련 발언은 현재 진행중인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 조사, 그리고 지난 2월말 갑자기 발표된 신문판매와 광고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한 신문고시가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나온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것은 종래 안정남 국세청장이 나 진념 부총리가 세무조사는 전혀 다른 의도가 없는 ‘통상적인 정례조사’라고 한 말과는 분명히 다르다.

정부의 언론사 조사가 순수한 세무행정 차원 아닌 다른 목적, 즉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지적하는 까닭은 첫째 이번 조사의 결과가 언론계에 심상찮은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고 둘째 김대중 정부가 구상하는 언론개혁이 세무 및 불공정거래 조사와 제도개혁의 양면작전으로 추진된다는 사실 때

문이다. 이번 언론사 조사 결과를 미리 예단하는 것은 경솔한 일이 되겠지만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단 칼을 뺀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의 한국 언론상황이 1999년 9월 중앙일보사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과 흡사하다는 신문칼럼도 나왔지만 언론사주 중 누구는 사법처리 되고 누구는 무사할 것이라는 등 온갖 소문이 무성하다. 이제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조사의 태풍이 어떻게 언론계를 강타할지 지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모든 사물에는 양면이 있듯 이번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조사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조사가 공평하게만 행해진다면 정부의 당초 의도와는 관계없이 언론계를 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언론사의 경영상 문제와 언론시장의 무질서가 국민들이 우려할 수준에 이른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이 점에 대해서는 언론계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다만 이번 언론사 조사에서 정부당국이 특정 신문사를 표적으로 설정해 놓고 먼지털이식 조사를 하거나 처리기준이 모호하여 다른 업종과의, 또는 언론사들간의 형평성을 잃는다면 야당과 언론계 일부에서 제기해 온 우려가 현실로 입증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전혀 달라진다. 지난 3월 1일 김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때 한 대학교수는 현행 조세법 자체가 지키기 참 어려운 법이어서 그대로 준수하려 하다가는 기업이 망하기가 쉬우므로 세무 조사과정에서 언론 본연의 기능이 위축되는 일이 없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직언했다. 김 대통령은 그런 우려를 관계당국에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답변했지만, 만약 그의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정부가 미워하는 언론사에 대해 세법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해서 목을 조른다면 그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이 아닐 수 없다.

우려되는 言論自由 위축

김 대통령이 밝힌 편집문제와 공정정보도문제에 관한 제도개혁은 언제 어떻게 추진될

지는 불명확하다. 현재 진행중인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조사가 일단락 된 다음 그 여세를 몰아서 시작될지 아니면 이것과는 별도로 적당한 시점에서 착수될지는 예측키 곤란하다. 현재 국회에는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입법청원이 접수되어있는데 제도개혁을 단행하려면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현재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야당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김 대통령이 말한 대로 국회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작년 11월 국회에 청원한 정기간행물등록법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사 주식지분상한을 30%로 하고, 노사 동수의 편집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그 목적은 한마디로 이른바 족벌언론사의 오너를 무력화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안이 과연 진정한 언론창달에 기여할 방안인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언론개혁의 목적은 언론창달에 두어야 할 것이다. 언론개혁의 이름 아래 단행되는 조치가 언론자유 위축을 가져온다면 진정한 언론개혁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가족경영 언론사 오너들에 대한 증오에 가까운 감정의 응어리가 우리 언론계 일각에 팽배해있는 것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강제조항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이다. 지금 선진국들이 실시하고 있는 언론사의 소유와 관련된 일반적인 규제는 신문과 공중과 방송의 겸영금지제도와 외국인의 언론사 소유제한제도이다. 그리고 일부 서유럽 국가에서 여론의 독점방지를 위한 시장점유제한제도를 두어 대체로 30%를 한도로 설정해 놓고 있지만, 사기업인 신문사의 주식 소유지분 자체를 강제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이 안이 주식소유지분의 한도를 30%로 한 근거도 모호하지만, 설사 그런 안이 법제화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실효성은 지극히 의문시된다. 왜냐하면 30%를 가진 주주라도 능력과 수완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지배주주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30%주주로서 경영권을 계속 장악한다면 과거처럼 편집에 간여 안 한다는 보장도 없다. 만약 반대로 그가 경영능력이 부족한 30%주주라면 끊임없는 경영권 도전 받아 언론사 운영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언론사가 경영불안상태에 놓이게 되면 내부적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과 외부, 특히 정치권력에 대해 독립을 지키기가

어렵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권을 탈취당할 우려도 있다. 이 같이 실효성이 불투명한 안을 가지고 지난 80년 이상 한국에서 정착된 언론사의 경영전통을 일거에 허물어뜨리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신문사 편집의 기본원칙과 세부지침을 포함하는 편집규약을 제정하는 편집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지는 언개련 안은 더욱 파격적이다. 편집은 모든 이해집단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 자본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하지만 이와 똑같이 노조로부터도 독립을 유지해야 한다. 1977년의 영국 왕립위원회는 심지어 편집책임자는 동료들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만약 노사 동수의 편집위원회 설치안이 채택된다면 발행인과 편집책임자의 권한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며 한국언론계는 편집방침을 둘러싸고 1980년대 후반의 노사분규 이상의 격렬한 노사간 대립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이 안이 채택되면 언론사 경영주는 편집실권을 노조에 탈취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편집규약의 아이디어는 독일 언론사의 예에서 취한 듯 하지만, 독일의 편집규약은 한국언론사에서 노사간에 체결되는 편집권협약과 비슷하고, 편집위원회는 기자들 내부의 위원회이지 우리 언개련이 제안한 것 같은 노사공동의결기구가 아니다. 독일 언론사의 기본적 편집방침은 회사측에서 따로 정하는 것이며 편집규약은 그 방침 안에서 행하는 편집문제를 다룬다. 또한 현행 방송법(제4조 4항)이 규정한 편성규약은 방송사업자가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노사동수의 의결기구인 편집위원회가 제정토록 하지는 언개련의 신문사 편집규약과는 제정절차가 완전히 다르다. 물론 방송법은 편성위원회 설치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개혁의 목표는 **공익과 私益의 조화**여야

언론사 오너의 주식지분제한과 노사 동수의 편집위원회 설치안은 한국언론계의 기존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가히 혁명적인 변화라 할 것이다. 만약 그 혁명적 변혁이 진

정으로 한국 언론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이에 따른 고통을 우리는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이성적인 결론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러한 변혁은 한국 언론의 창달에 이바지하기보다는 언론자유 의 약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언론사가 정치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노사관계에서나 독립성과 안정성을 상실할 경우 그 결과는 언론자유 의 위축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시민단체가 추진중인 언론개혁의 주된 명분은 가족경영 신문사의 소유구조가 공정보도를 해친다는데 있다. 지금까지 비록 일부이기는 하겠지만 언론사 사주들이 사적 목적을 위해 언론의 힘을 악용하고 공적 임무를 망각하여 편집에 부당한 간섭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많은 사례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시정할 시점이 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확실히 거대 언론사의 상업화와 독점화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이제 한국 언론계에도 사회공기로서의 공익성과 사기업체로서의 이윤추구 활동 사이에 적절한 조화가 이룩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와있다. 문제는 그 방법론이다. 그 핵심은 언론자유라는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나에 있다.

오늘날 민주국가라 하더라도 무한정의 자유방임은 있을 수 없다. 공공선을 위해서는 적절한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점에서는 오늘날 한국의 언론상황은 1947년 미국에서 언론사들이 수정헌법 1조의 언론자유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친스위원회가 언론의 책임을 강조한 보고서를 발표하던 당시와 유사한 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한다면, 시민단체가 제안한 개혁안은 그 목표가 어디에 있건 지나치게 소박한 편집권 지상주의에 빠져있을 뿐 아니라 우리 헌법이 규정한 언론자유 의 본질을 침해하는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언개련의 개혁안은 어딘가 권위주의적 유희에 사로잡힌 발상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다. 외국의 많은 학자들은 신문의 사적 소유 인정을 그 나라 언론자유 의 척도 중 하나로 들고 있다. 이것은 물론 신문의 국가소유에 대한 반대개념이지만, 따지고 보면 언론사주의 주식지분 제한 역시 헌법

이 인정한 신문발행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이다. 과잉규제는 헌법위반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언개런 안은 신문사의 집단소유제를 법으로 강제하려는 점에서 그렇다.

編輯權에 대한 혼선

편집권에 대해 지금 이 자리에서 자세히 논의할 시간은 없으나 다만 한두 가지 중요한 사실만을 지적하고 싶다. 원래 편집권이라는 말이 일본 이외의 다른 나라에는 없는 특이한 개념이라는 사실은 이제는 한국 언론계에서도 상식으로 되어있지만 그 개념이 한국에 들어와서는 몇 가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우선 편집권은 대외적인 의미에서는 외부의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간섭받음 없이 자유롭게 신문과 방송을 제작할 수 있다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구체적으로는 보도의 자유를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대내적으로 편집과 편성이라는 언론사 내부의 업무분장의 문제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내적인 의미의 편집권이라는 단어를 일본에서와는 달리 '편집방침을 결정할 권한' 과 '편집을 행하는 권리' 의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다. 이 점에 관련하여 1948년에 일본신문협회가 맥아더사령부의 권유에 따라 편집권성명을 낼 때의 경과를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 일본신문협회 간부가 이 성명의 채택을 앞두고 맥아더사령부 당국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영어의 'the right to decide editorial policy' (편집방침을 결정할 권한) 를 '편집권' 이라고 번역해서 제시했더니 미측에서 이에 찬성했다 한다. 맥아더사령부측은 1주일 후 일본신문통신방송노조의 요구로 열린 편집권 공청회에서 "미국에서는 편집권이라는 말은 없으나 신문에 실리는 기사일체를 포함하여 (편집에 관한 모든 방침을) 편집방침(editorial policy)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편집권이라 불러도 좋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맥아더사령부측은 "실제문제로서 경영자는 일반적인 편

집방침을 줄뿐이고 개개의 편집업무는 편집스태프의 자주성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편집권’은 다른이닌 ‘편집방침 결정권’이라는 의미이다.

- 2) 편집권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편집권이 오히려 회사 안의 내부적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서 노조활동까지도 제약하는 경영자의 무기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주장에 찬성하는 학자가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일본의 편집권은 미 점령당국의 개입으로 마련된 신문경영자의 ‘내적 언론통제 권력’이며 “한국의 언론노조가 편집권의 독립 또는 편집권의 존중을 주장하는 것은 편집권 개념의 형성과정에 대한 무관심 내지 그 본질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한다”고 했다. 따라서 편집권은 오히려 언론의 내적 자유에 대한 천적(天敵)이라는 것이다.
- 3) 이처럼 ‘편집방침을 결정할 권한’인 편집권이 한국에서는 80년대 후반의 각 언론사 노사협상 과정에서 본래적인 의미와 함께 일부 언론사에서는 ‘편집을 행할 권리’로도 확대해석되어 편집권 공유조항까지 나오게 되었다. 현재 한국의 언론사 단체협약에 편집권 공유를 조문화한 회사가 10여 개사나 된다. 흥미 있는 사실은 이들 언론사가 모두 기자들의 편집권 공유를 규정하면서도 그 최종결정권은 편집책임자(또는 편집국장)에게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에서 말하는 ‘편집권’이 이들 언론사에서는 편집에 관한 ‘최종결정권’으로 표현된 셈이다.
- 4) 그런데 이번에 언개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노사 동수의 편집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편집규약도 정하고 편집의 기본방침도 정하는 등 노사가 함께 모든 편집업무를 총괄하자는 것이어서 편집권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編輯人の時代’ 다시 와야

그러면, 언개련안에 문제가 있다면 도대체 언론개혁을 어떻게 하지는 것인가라는 질

문이 제기될 것이다. 권위주의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정상적으로 하자는 이야기다. 한국언론이 당면한 문제는 취재 편집 언론윤리 문제에서부터 판매 광고 등 경영, 그리고 언론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보도의 공정성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사의 정확성, 공정성, 전문성, 심층성과 의제 설정 기능의 문제이다. 잦은 오보와 이로 인한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는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언론의 개혁은 바로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 언론인들은 지금의 한국 언론의 병리를 시정하고 더 나아가서 그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는 것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 언론수준의 향상을 언론의 선진화라 해도 좋다. 이를 위해 제도와 관행의 개혁이 필요하다면 서슴지 말고 우리 언론계는 이를 단행해야 한다. 이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언론이 해야 한다.

언론사 사주의 편집간섭문제도 필시 보도의 공정성 문제일 것이다. 1998년의 한국언론연구원 조사결과는 오너와 경영진의 간섭으로 공정보도가 저해된 것이 17.4%에 달한다고 했다. 최근 《신문과 방송》에서 조사한 바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아마 이것은 사실일 것이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은 편집책임자의 권한 강화이다. 차제에 언론사주는 환골탈태하는 각오로 편집책임자에게 편집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가 사시를 위반하지 않는 한 편집업무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일부 언론사가 편집간부들을 포함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복안을 밝힌 일이 있는데 그 성격이나 권한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으로 한국의 언론계에도 '편집인의 시대'가 다시 와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편집인이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될 수는 없다. 상하와의 협동을 통해 지휘권을 확립해야 한국언론이 살아난다. 이를 위해 독일의 선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방정배 교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독일의 신문사 편집규약의 내용은 공통적이다. “편집진은 신문기사와 편집지면을 신문사의 기본입장에 관한 지침의 범위 안에서 제작하고 생산한다. 그리고 편집진은 편집국장단의 책임과 지휘아래 기사를 작성하되 국장단의 간섭과 영향을 받음이 없이 기사를 작성한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국장단의 의견이 기사방향을 두고 합의를 못할 경우 최종결정은 국장단이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독일의 경우 편집의 기본강령은 회사측에서 사시에 입각하여 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모델이라 할 이 편집규약에는 또한 “보도로 말미암아 회사의 사시가 훼손되거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보도할 것인지 이니할 것인지에 관해 편집국장과 경영진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도의 公正性은 최대의 과제

그러나 한국언론의 오보와 편파보도, 그리고 불공정보도는 오너 때문만이 아니라 기자 자신의 잘못에서 나온 것이 더 크다. 앞의 조사에서 공정보도 저해요인 중 언론인의 노력부족 또는 자질부족이 27.4%에 달한다. 관훈클럽이 발족시킨 한국언론2000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1997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대상 언론인 33%가 타매체에 난 보도를 확인 없이 그대로 베끼는 판이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마치 불공정보도가 오너 때문만인 것처럼 기자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며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다.

언론인의 윤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2000년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 취재기자 중 신문윤리강령의 명예와 신용존중 및 사생활보호준수 규정을 위반한 적이 매우 많다가 17.8%, 많은 편이다가 63.6%, 그저 그렇다가 16.1%, 적은 편이다가 2.3%, 거의 없다가 0.3%로 나왔다. 같은 조사에 의하면 취재기자 중 48%가 현금 위주의 촌지를 받고있다고 응답했다. 작년 가을 일어난 어떤 출입처 기자실의 골프접대계획 시비도 한국언론인들의 윤리수준을 말해주는 한 예이다. 이런 정도의 언론인 윤리수준은 아직도 부패가 생계수단화한 후진국 수준과 별로 다를 바 없다.

이상과 같은 언론의 근본적인 개혁은 누구보다도 기자들 자신이 해야 한다. 언론사 경영진의 잘못이나 법제의 미비를 탓할 일이 아니다. 일선 기자들이 스스로 해야 할 언론개혁의 올바른 길을 외면하고 경영주 무력화를 목표로 투쟁을 벌이는 것

은 아주 정치적인 투쟁이며 언론개혁의 책임을 다른 데로 전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언론개혁의 代案들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상 정권이 언론개혁을 들고 나온 것은 예외 없이 언론보도에 대한 권력의 불만과 언론장악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1958년의 국가보안법안 파동이 그러했고 1964년의 관제언론윤리위원회법안 파동이 그러했으며 1980년의 언론통폐합도 그러했다. 모두가 권력의 필요에 따라 언론의 비판강도를 무디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만은 예외라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시간에 이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민심에 역행하여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고 있는 조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가 결과적으로라도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과연 어떻게 될지는 머지않아 판명될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사방에서 언론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외치는데도 지금까지 언론계가 침묵을 지켜 온 것은 언론계의 안이함과 나태와 무책임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한다. 오늘 편협에서 이런 좋은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지만 토론을 가진 다음 반드시 결실로 연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언론은 1987년 6·29선언으로 민주화와 함께 지금까지 양적으로는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지만 아직도 질적으로는 그 이전의 수준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앞에서 지적한 보도의 공정성과 언론인의 윤리문제 이외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문지면과 방송프로의 획일성이다. 모든 신문이 — 그것도 10개에 달하는 중앙종합지가 — 획일화된 지면으로 한정된 독자를 서로 쟁탈하려다가보니 살인극까지 벌여졌다. 방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번 김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공중과 3사와 유선 방송 뉴스채널들까지 동원되어 합동 중계한 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방송의 독립

성은 아직도 요원하다. 공영방송인 KBS의 두 채널간의 특성과 공영인 MBC의 진정한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

공중파 3사의 동시 중계에 대해 인쇄매체들은 한결같이 시청자의 채널선택권을 박탈한 행위라고 비난했지만 비슷한 현상은 신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서로 신문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독자의 신문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한국신문의 도약이며 21세기의 과제이다.

언론개혁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이 논문의 주제 밖이지만 몇 가지만을 토의를 위한 발제용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언론개혁은 우선 언론계가 주동이 되어야 한다. 보도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각종 방안을 연구하여 과감하게 기존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언론개혁은 언론사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밖에서도 체크질을 해야 한다. 소비자(독자 및 시청자)운동, 언론감시 시민운동, 매체간의 상호비판, 옴부즈맨제도, 언론윤리위원회와 중재위원회의 기능강화, 방송위원회의 위상강화 등을 통한 외부의 감시와 견제, ABC의 신문부수공사와 광고시장의 정상화, 판매시장의 무한경쟁억제와 공판제 실시, 그리고 언론사경영의 투명화 조치 등을 통한 언론계의 체질개선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장기능의 작동이다. 시장의 실패에는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총독정치의 유산인 정부기관지를 계속 보유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언론사에 대해 특혜용자를 해주어 퇴출되어야 할 언론사를 연명케 하는 것 등은 언론시장을 왜곡하는 조치이다. 언론산업 역시 선의의 경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시장이 개별사의 승패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책임은 자유로워야 할 언론의 내부 일에 간여할 것이 아니라, 언론사의 투명경영을 정착시키도록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하고 공정한 시장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데 있다. 그러면 시장에서 외면당한 언론사와 반언론적인 언론사주도 자연 도태되면서 한국언론도 선진화할 것이다.